

<p>영되고 있는 현행 조례에 대하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무원상 관련부문을 모두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환경상과 중복되는 환경보호부문을 삭제하며, 기타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·보완하려는 것임.</li> </ul> <p>2.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사항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자랑스러운공무원상 관련부문 등의 삭제에 대하여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행 조례는 시민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하여도 청렴근검, 친절봉사, 시정발전 등 3개 부문에 대하여 연간 200명 범위내에서 표창하고 매월 5만원씩 1년간 6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여 왔음.               <p>&lt;공무원 시상내역('92-'98년)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상인원 : 1,353명(연간 193명)</li> <li>- 수당지급액 : 8억 12백만원(연간 1억 16백만원)</li> </ul> <li>○ 공무원 관련 표창은 196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공무원표창조례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데, 시상내용중 특히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「새서울봉사상」은 성실하게 일하는 부서와 직원들에 대하여 지금까지 자랑스러운공무원상에서 수여해 온 것보다 그 규모와 포상 내용면에서 보다 나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.               <p>&lt;새서울봉사상 시상계획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우수부서표창 : 연간 12개부서, 부서당 100만원씩</li> <li>- 공무원표창 : 연간 540명, 1인당 50만원씩</li> </ul> <li>○ 따라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랑스러운공무원상 부문은 현행 공무원표창조례와 표창 및 시상금에서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</li> </li></li></ul> </li> <li>2) 자랑스러운시민상 중 환경보호부문의 삭제에 대하여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랑스러운시민상은 지역사회발전, 시민화합, 사회질서확립, 미풍양속, 근검절약, 환경보호 등 6개 부문에 대하여 연간 총 50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시상해 왔음.               <p>&lt;시민상 시상내역('92-'98년)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총인원 : 1,141명(연간 163명)</li> <li>- 시상금 : 11억 41백만원(연간 1억 63백만원)</li> </ul> <li>○ 현재의 6개부문중 환경보호부문은 '95년</li> </li></ul> </li> </ol>	<p>하반기부터 '98년 하반기까지 총 67명에게 시상하였으나, 지난 '97년 1월 15일자로 제정된 서울특별시환경상조례에 의거 별도로 환경분야의 시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바, 자랑스러운시민상과 사실상 중복되어 마땅히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</p> <p>3) 기타 개정사항에 대하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타 개정된 부분을 보면 안 제11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시장표창이상의 표창을 받은 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수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임.</li> <li>○ 이는 기간은 비록 3년이 되지 않지만 사회각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공적자의 사기를 더욱 고양시킬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</li> </ul> <p>3. 결 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따라서 현행 조례중 서울특별시공무원표창조례와 중복되는 공무원상 관련부분에 대하여, 서울특별시환경상과 중복되는 시민상 중 환경보호부분에 대하여, 기타 표창수여기간 제한부분에 대하여 각각 삭제조작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</li> <li>○ 다만, 시민상 수상자의 수상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때는 즉시 취소하고 지급된 물건이나 금전을 치탈하는 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,</li> <li>○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의 종류를 보면 자랑스러운시민상을 비롯하여 문화상, 어린이 및 청소년상, 시민대상, 환경상, 건축상 등이 각각의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바, 장기적으로는 조례정비차원에서 통합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시민의날조례증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검 토 의 견</p> <p>1. 개정이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본 조례는 지난 94년 10월 25일 한양천도 600년을 기념하여 매년 10월 28일을 서울시민의 날로 정하고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서울시민으로서의 긍지와 희망을 갖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자 제정된 조례로서,</li> </ul>
--	---

22 (第111回-行政自治第3次)

- |  |   |
|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존의 관주도의 행사추진에서 민간주도의 시민자율축제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고,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·보완하려는 것임.</li> </ul> <p>2. 그 동안의 추진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994년 10월 25일 조례 제3121호의 제정으로 10월 28일을 서울시민의 날로 지정한 이후</li> <li>○ 제1회 및 제2회 행사는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봉파사고로 기념식만 실시하였으며,</li> <li>○ 제3회 행사는 동대문운동장에서 서울시민 5만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「서울시민 한마음 큰잔치」를 펼치고 각종 체육행사와 문화예술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였음.(소요 예산 16억 96백만원)</li> <li>○ 제4회 행사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념식과 축하공연을 실시하였으며,</li> <li>○ 제5회('98년) 행사는 각계 시민대표가 중심이 되어 「남산껴안기」 등 3개분야 18개 행사를 다양하면서도 간소하게 실시하였음.(소요 예산 1억 77백만원)</li> </ul> <p>3. 주요개정내용 및 검토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부분은 ①현행 조례 제3조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시민의 날 행사종류를 삭제하고 ②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단위로 행사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③필요한 경우 시민단체로 하여금 행사를 주관도록 하고,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임.</li> <li>○ 그 동안의 시민의날 행사추진을 보면 관청주도로 기념식과 함께 각종 체육대회 등 대규모의 소모적 행사에 치중한 면이 있으며, 시민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축제분위기 조성에는 미흡하였다고 사료되나, 지난해('98년도)의 경우에는 시민대표가 중심이 되어 행사내용과 추진방법을 선정하고 시민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·실시하였음.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행사기간 역시 10월 28일 당일의 소비지향적인 일과성 행사보다는 주간 또는 월간으로 기간을 정하여 600년 서울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, 첨단 현대과학을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이 함께 지속적으로 만나고 즐길 수 있는 이벤트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.(예 : 광주비엔날레, 부산 국제영화제, 도쿄불꽃축제)</li> <li>○ 따라서 시민의 날 행사에 시민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, 기간을 정하여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본 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</li> <li>○ 다만, 시민의 날 행사를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「가칭 시민의날추진위원회」와 같은 기관을 제도적으로 상설화(조례에 포함)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<br/>조례증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증<br/>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명 “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조례”로 한다.</p> <p>제1조 중 “시민과 공무원”을 “시민”으로 하고, “자랑스러운 시민상(이하 “시민상”이라 한다) 및 자랑스런 공무원상(이하 “공무원상”이라 한다)”을 “자랑스러운 시민상(이하 “시민상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</p> <p>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2조(수상대상) 시민상의 수상대상은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시민 및 단체에 한한다. 다만,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.</p> <p>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③시민상은 연간 500명 이내로 하되 부문별 수상인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제6조제2항중 “상금이나 수당”을 “상금”으로 한다.</p> <p>제7조제1항중 “시민상 및 공무원상”을 “시민상”으로 하고, 같은조제3항중 “서울특별시 내</p> |
|--|---|

'98.10.27, 29

시민여론조사결과(공보관찰)

- 행사의 민간주도 운영이 좋다 : 75.4%
- 행사주체를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지원하는 것이 좋다 : 81.9%